

“함께한 30년, 미래를 여는 대덕산업단지”

## (사)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

우) 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397 / 전화 042-931-6365 / 팩스 042-931-6366  
지원사업팀장 정덕영 담당 김범수 홈페이지 www.dicox.or.kr

문서번호 대산관 제23-253호

시행일자 2023. 7. 3.

경유

수신 전 입주업체

참조

선결		지시	
접	일자	결재·공람	
수	번호		
	처리과		
	담당자		

제 목 2023년도 2/4분기 입주업체 가동현황 및 하계휴가 조사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입주업체 가동현황 조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 입주업체 의무사항이므로, 별첨 조사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2023. 7. 18.(화)까지 이메일(zen7272@naver.com) 또는 관리공단으로 FAX(931-6366)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 시 산집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) ① 양수(매수) 및 경매취득 후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아니한 업체

② 공장으로 미등록 업체

- ①·②의 경우 공장설립 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③ 임대 미신고로 인한 임차업체

- 임대자 : 산업집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임차자 :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※ 향후 공장을 임대·처분·취득 시 관리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임대·처분은 사전 신고하시고, 미신고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함.)

※ 붙임 : 2023년도 2/4분기 가동현황 및 하계휴가 조사표(홈페이지 게시) 1부. 끝.

(사)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